

# 대구대학교와 평택대학교 간의 협동강의 협정서

대구대학교와 평택대학교(이하 “양 대학교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협동강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평택대학교간의 교류에 관한 협정서 제 2조에 의거하여 양 대학교가 상호간에 협동강의를 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“협동강의”라 함은 양 대학교가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 대학교의 교수에게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강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조(협력단위) 협동강의를 실시하는 협력주체는 학과단위로 추진한다.

제 4조(호혜원칙) 양 대학교의 각 학과는 강의를 상호 교류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조(수업인정) 상대방 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요청한 학교는 그 교수가 실시한 강의를 정규수업으로 인정한다.

제 6조(수업방식) 협동강의 과목의 선정, 수업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추진학과 단위에서 결정한다.

제 7조(강사료) 상대방 학교 교수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강의를 요청한 학교의 시간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 8조(성적인정 등) 협동강의의 교과목 이수단위, 수업시수, 성적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 대학교가 각각 자체규정에 따른다.

제 9조(기타) 이 협정서가 정한 이외의 협동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양 대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998년 6월 12일

대구대학교

총장 박 윤 흔

평택대학교

총장 조기홍

서명 :

박윤흔

서명 :

조기홍